

#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207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15. . . 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의

## 1. 개정사유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 (제명, 안제1조~제2조, 안제4조~제5조, 안제6조)

## 3. 근거법규
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##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#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하고,  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, “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를 각각 삭제한다.  
같은 조 “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4조에 따라”로,  
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 
“회의운영 등에”를 “회의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영 제54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지방자치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제19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4조에 따른”으로,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 
“제127조의 규정에 의해”를 “제12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<b>울산광역시중구의회</b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제2조(회의총일수)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로 한다</u></p> 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<u>영 제54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. <u>다만, 영 제19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(생략)</p> <p>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 | <p><b>울산광역시 중구의회</b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 에 관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제2조(회의총일수)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</u><br/>-----<br/>-----.</p> 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<u>지방자치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4조에 따른</u><br/>----- <u>각 호</u> -----<br/>-----<br/>1. ---<br/>----- <u>제54조제1항 단서에</u><br/><u>따른</u> -----<br/>-----<br/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4조에 따른</u><br/>-----<br/>-----..</p>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 <p>제6조(회의운영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 | <p>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</u><br/>-----<br/><u>제127조에 따라</u> -----<br/>-----.</p> <p>제6조(회의운영) -----<br/>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</u>」 -----.</p> |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1207)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5. 11. 23.(월)
- 나. 제출 자 : 권태호 의원 외 4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11. 2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12. 8.(화)

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)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  
(제명, 안제1조~제2조, 안제4조~제5조, 안제6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 : 없음

#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